1. 개정이유

LPG충전소의 휴·폐지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특정사용시설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안전기준 등을 마련하고, 지역축제장의 특성에 맞는 시설기준 제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LPG 충전소 휴·폐지 시 안전관리규정 확인(안 제18조, 제46조, 별지 제18호 서식)

LPG 충전소 휴·폐지 시 준수해야 할 안전관리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으므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사업또는 저장소의 사용 중단·폐지 신청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안전교육 계획보고 대상 변경(안 별표19)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특정사용시설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252호, 2025. 12. 30. 공포, 2026. 12. 3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다. 이동식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안전기준 마련(안 별표15, 별표20)

1) 가스토치 시설에 대한 공급자의 안전기준 마련(안 별표15)

- 공급자의 점검기준에 가스토치 연결부 정상 작동 점검 및 산소와 함께 사용하는 LPG 사용시설의 역화방지장치 설치 확인을 추가

2) 사용자의 가스토치 취급 준수사항에 대한 기술기준 마련(안 별표20)

- 사용자가 용기 및 가스토치 미사용시 밸브 잠금, 가스토치의 정상 점화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전유지기준 및 점검기준 마련

라. LP가스 사용시설 시공확인제도 도입(안 별표20)

시공 결함과 사용자 부주의 등 가스 사고의 과실을 판별하기 어려워 피해보상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시공자가 사용시설 설치·변경공사 완공 직후 시공자가 사용자에게 적법한 시공을 확인하는 시공확인서 발급 제도 신설

마. 지역축제장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기준 제정 근거 마련(안 별표20)

지역축제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지역축제장 LP가스 사용시설은 현장 설치 여건 상 현행 안전기준 적용이 어려워 지역축제장 전용 특례고시 제정을 위한 근거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산업통상부령 제 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후단 중 “폐지하거나”를 “중단·폐지하거나”로, “폐지하려면 해당 액화석유가스를 폐기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중단·폐지하려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 결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및 제18조에 따른 중단·폐지 신고”로 한다.

별표 15 제3호가목11)을 13)으로 하고, 같은 목에 11) 및 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2) 중 “11)까지”를 “13)까지”로 한다.

11) 가스토치 연결 호스의 손상 및 밸브의 정상 작동 여부

12) 별표20 제1호가목6)바)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역화방지장치 적정 설치 여부

별표 19 제1호 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별표 20 제1호가목9)에 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1)에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2)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5호 중 “음식판매자동차”를 “지역축제장, 음식판매자동차”로 하며, 같은 호 중 “제70조제1항제7호”를 “제70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지역축제장, 제70조제1항제7호”로 한다.

차) 가스시설시공업자는 그가 설치·시공한 시설이 제69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사용자·시공자 인적사항, 시공내역, 시공확인사항 등과 관련된 정보가 기록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시공확인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사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바) 가스사용자는 가스토치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용기 및 가스토치 밸브를 잠글 것

다) 가스사용자는 가스토치가 정상적으로 점화하는지 점검하는 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9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사업개시 등의 신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이나 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1개월 이상 중단·폐지 또는 재개하려는 자는 개시·중단·폐지 또는 재개 전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시·중단·폐지·재개 신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폐지하거나 저장소의 사용을 폐지하려면 해당 액화석유가스를 폐기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18조(사업개시 등의 신고) ---------- ---------- ---------- ---------- ---------- ---------- ---------- -----. ---------- 중단·폐지하거나 -------- 중단·폐지하려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 결과----------.
제46조(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평가) ①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영 제14조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확인·평가의 결과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고, 영 제17조제3호에 따라 정기검사가 면제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제46조(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평가) ① ---------- ---------- ---------- ----------. ---------- ---------- ---------- ---------- ---------- ---------- ----------

자는 정기검사가 면제되는 기간 동안 확인·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 ---------- ---.
1.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와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법 제37조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는 제외한다)를 할 때에 같이 실시할 것. 다만, 법 제37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7조제1호·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협의하여 실시시기를 정하되, 1년에 1회 실시한다.	1. ---------- ---------- ---------- ---------- ---------- ---------- ---------- 제외한다) 및 제18조에 따른 중단·폐지 신고----------. ----- ---------- ---------- ----------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